

#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7조의2 각 호에 대한 조치

## 제출자 정보

의료기관명		개설자	
의료기관소재지		연락처	

## 조치 결과

조치 사항	조치 현황
「의료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절한 처리 완료 여부	
「의료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(전자의무기록 포함)을 적절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	보건소 이관/직접 보관
「의료법」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여부	안내문 게시 유/무 (사진 첨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(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자만 해당)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</li> <li>2. 「의료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(전자의무기록 포함)의 이관·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기타 안내 사항</li> </ol> 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함</li> </ul>	
기타 조치 사항	